



分類規程 (6)

白 麟

320 政 治 學

政治學은 西洋에서는 紀元前 五世紀頃 希臘에서 이미 發生하여 Platon(427—347 BC)과 Aristoteles(384—322BC)와 같은 偉大한 學者가 있었고 東洋에서는 數千年 前에 孔子 (551?—479BC)와 孟子(372?—289BC) 같은 政治思想家가 나타났다. 따라서 政治學의 歷史는 人間社會의 歷史와 거의 같은 때로보며 그 오랜 歷史는 다른 어떤學問에도匹敵 할수있다. 그러나 政治學은 또一面으로 穎은 學問이라 할수있으니 그것은 近代諸科學에 比해 그 科學的 體系性이 顯著히 缺如 되어 있어 今日에 있어서도 認識의 對象과 方法論에 關해 異說이 많다. 故로 具체까지나 未完成이란 印象이 強하다. 政治學은 普遍 政治現象의 分析, 解明, 批判, 等을 行하는 科學의 一部間이라고 하는데 이 政治現象을 어떤 境遇에 固有한것으로 보느냐 하는 点만으로도 많은 學說이 있다. 이것을 大別하면 國家에 이것을 限定하는것과 國가 社會萬般의 現象에 이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1) 特定國家 또는 學派의 政治學說은 政治學理論下에 分類하라.

(2) 國家의 起源에 對한 著述은 政治理論下에 分類하라.

(3) 特定國家의 政治史는 그 國家の 歷史와 같이 分類하라.

(4) 政治思想 政治思想史는 政治에 關한 것으로서 體系가 없이 여러 思想의 變遷을 取扱한 것을 말하며, 政治學史는 政治에 關한 體系化한 學說의 變遷을 取扱한 것이다. 이들 政治思想史, 政治學史는 320.9에 分類하라.

(5) 社會的階級 即 그 國家내에 있어서 階級의 差別待遇 特히 權利의 認定에 對하여 記述한 것은 323.2 國家와 社會階級下에 分類하라.

例 李朝의 兩班 印度의 四階級은 323.2.

(6) 小數民族, 國民, 種族集團의 社會的乃至 文化的 利益에 關한 政治的 問題에 對한 것은 323.1에 分類하라.

例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種族問題는 323.194.

(7) 合併 一國家 또는 地方이 他國家에 合併 또는 合同된 前後關係에 對하여 記述한 것은 合併 또는 合同된 國家나 地方의 歷史下에 分類하라.

(8) 革命, 反亂, 內亂, 暴動, 政權의 打倒, 政府의 組織 및 形態에 變化를 가지오게 한는 쿠데타의 性格等에 關한 一般的인 著述은 323.2 政治鬪爭下에 分類하라.

(9) 特定國에 있어서의 革命을 取扱한 圖書는 그 國家の 歷史下에 分類하라.

例 불란서 革命 944.04

5.16 革命 951.07

(10) 革命에 앞선 事件으로 그 事件이

혁命을 發生시킨 主要原因이 되고 있는 것을 記述한 圖書는 그 나라의 歷史와 같이 分類하라.

(11) 一地域에서만 發生된 內亂 또는 暴動일지라도 그 事件本體가 國家全體에 影響을 미치고 있을 때 그 事件에 關한 記述은 그 나라의 歷史와 같이 分類하라.
例: 三崩抄의 亂은 高麗史에.

(12) 革命에 對한 理論 解說書는 323.2 政治鬪爭下에 分類하라.

(13) 英國產業革命에 對한一般的의 著述은 英國史와 같이 分類하고 產業革命을 生產手段의 變革이라는 觀點에 經濟學의 으로 說明한 것은 經濟史와 같이 分類하라.

(14) 外 交

두나라 또는 二大陣營 사이에 繼續된 冷戰에 關한 圖書는 327 外交關係下에 分類하라.

例 東西의 冷戰 327.1.

(15) 두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國際關係에 對한 記述은 그 主要한 國家를 先位로 하고 地理區分 사이에 ○을 附加한다.
例: 英佛의 國際關係 : 327. 42044.

(15) 國際法 및 慣例에 依한 兩國政府間의 公的 關係를 取扱한 것은 341.7 分類하라

一 戰爭 또는 事件에 關한 外交關係에 對한 記述은 그 戰爭 또는 事件의 歷史와 같이 分類하라

例 第二次 大戰外交史는 940. 532.

(16) 植民地 植民地의 獲得, 永久的 統治, 本國과 植民地와의 關係를 全般的으로 다룬 圖書는 325. 3에 分類하라.

(17) 植民地에 對한 政策, 行政, 國際聯盟에서 規定된 바에 依한 委任統治, 信

託統治에 關한 圖書는 325. 31에 分類하라

18) 特定植民地의 政治 및 文化事情을 記述한 것은 그 植民地의 歷史下에 分類하라.

(19) 植民地에 있어서의 叛亂은 그 植民地의 歷史와 같이 分類하라.

植民地에 關한 戰爭: 一植民地 또는 領土를 둘러싸고 兩國間에 벌어진 戰爭에 關한 記述은 그 植民地 또는 領土의 歷史下에 分類하라.

(21) 移住 植民 및 移民에 對한 制限 選定 國家間의 移民 問題 또는 移民 管理에 關한 圖書는 325. 4에 分類하라.

(22) 一國家 또는 地方으로 부터 他國地方에 移住 植民한 것을 取扱한 圖書는 移住 또는 植民하여 가있는 國家 또는 地方의 移植民下에 分類하라.

(23) 一國家 地方으로 부터 여러 다른 地方에 分散 移住한 것을 取扱한 圖書는 그 移民團의 나간 國家 또는 地方下에 分類하라.

330 經 濟 學

經濟學은 財의 生產, 評價, 分配, 消費에 關한 學問이다.

(1) 經濟, 經營, 商品, 交通等 全般에 걸쳐 取扱한 것은 330 經濟下에 分類하라.

(2) 經濟史 및 事情은 330. 9에 分類하고 經濟學史 및 學說史는 330, 109 經濟理論下에 分類하라.

(3) 經濟地理 및 商業地理는 經濟事情과 같이 330. 9에 分類하라.

(4) 國家社會主義, 社會民主主義, 基督教社會主義 等에 關한 것은 335. 1—9 經濟 아래으로 기하에 分類하라.

오토메이션과 原子力を 利用한 大量生產에 關하여 記述한 圖書는 338. 8에 分類하라.

하라.

(5) 한 國家의 他國에 對한 經濟援助에
關한 圖書는 338.91 에 分類한다.

例 美國의 對外國 援助政策: 338.9
173.

(6) 그러나 國際技術援助에 關한 圖書
는 309.22 에 分類한다.

(7) 財의 生產, 分配, 消費 一般에 對
한 著述은 經濟一般에 分類하라.

340 法 律

法의 體系

모든 사람이 法律을 생각할 때에는 먼저 그나라에서 現在 施行되고 있는 여러 実定法에 對하여 觀察하게 된다. 특히 成文法을 主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大部分이 現行法律命令을 가지고 論하게 된다. 社會生活에 있어서自己個人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個人的 利害 社會的 利害 國家의 利害나 나아가서는 國際의 利害와 複雜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다. 法은 이와 같은 利害를 調和하고 共同生活의 秩序를 維持하는 것이다.

現代에 있어서의 法律은 각各 特有한 指導原理에 基礎하여 이를 利害를 調和하고 하는 몇개의 系列에 分하여 觀察되고 있다. 즉 主로 國家關係와 統治關係를 規律하는 公法體系와 社會關係 平等關係를 規律하는 私法體系와 私法의 公法化하여 公法과 私法의 中間에 位置하는 社會法體系이다.

(1) 法律門에 마련 되어 있지 않는 特殊主題에 關한 法令 및 그 解說書는 그 主題下에 分類하라.

例 勞動法은 331.026.

(2) 法律에 關한 基本的인 問題나 廣範한 分野에 關한 體系의으로 解說한 것은

言語에 關係치 않고 法律一般下에 分類하라.

(3) D.C.는 本表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特殊主題에 對한 法律, 法規는 그 主題下에 分類하라고 指示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成文法為主인 國家의 法律은 特別法도 成文化하여 一般法과 같아 다루고 있으므로 특히 法律圖書館에 있어서는 一般法과 特別法을 한곳에 둘어야 한다.

公法과 私法

이의 區別은 羅馬法 以來 行하여지고 있는 오랜 分類法이다. 이의 標準에 對하여는 여러 가지 學說이 對立되고 있었다. 即 法律의 目的에서 兩者를 區別하는 利益說 法律關係의 主體에서 區別하는 主體說 또 한 法律關係의 內容을 標準으로 하는 法律關係說等이 있는데 現在는 法律關係說의 一種인 統治權說이 多數說이다. 이說에 依하면 그 法律의 規定하는 關係가 國家統治權에 直接적인 關係를 가지는가의 與否에 따라 前者は 公法이고 後자는 私法이라 한다.

一般的으로 憲法 行政法 刑法 訴訟法은 公法에 屬하여 民法 商法等은 私法인 것이다. (同一 法令中에 있어서도 公法의 規定과 私法의 規定은混在하고 있다.)

最近 이 兩者의 中間에 所謂 社會法(勞動法과 經濟法等)이라는 新領域를 認定하여 公法 私法 社會法의 三區分을 主唱하는 學說이 一般化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法律)

(1) 私法學 및 私法一般에 關한 著述은 民法과 같이 分類하라.

成文法과 不文法

大抵法律의 存在形式에는 成文法과 不文法의 두 形態가 있다.

成文法은 文書로서 表示되며 一定한 形式에 따라 그 內容이 定해지며 또한 公布되는 法律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編, 章, 節, 款, 項으로 日次를 세워서 組織되어 分量의 으로 많은 것은 法典이라하고 少은 것은 單行法이라 한다. 法典과 單行法의 區別은 단지 體裁와 分量의 問題인데 不過하다. 이에 反하여 不文法은 그 內容이 文書로 作成되어 있지 않은 法律로서 社會一般의 慣習이 文書 없이 法律化된 慣習法과 裁判所에서 同一趣旨의 判決을 反復한 結果 그 趣旨가 그대로 法律化된 判例法이 이에 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日本과 같이 成文法을 主로하는 유럽 大陸의 法制에 影響을 받아 成文法主義인 大陸法系에 屬한다. 이에 反하여 英國은 不文法을 主로 하는 나라이며 英國의 影響을 받은 美國도 不文法主義인 英美法系列에 屬한다.

英 美 法

英美法의 法源은 이를 大別하여 成文法과 判例法의 二로 나눌 수 있다. 成文法이라 함은 國會 또는 國王 行政總等이 制定한 法이고 判例法이란 裁判所의 判例에 依하여 이루어진 法인 것이다. 裁判所에서 判決을 내리는데는 先例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先例에 없는 事件에 對하여는 그와 類似한 事件에 對한 判決에서 類推하여 判決하여 이것이 또 先例로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判例法은 詳細하게 되어 간다. 이와같이 整備된 Common Law는 形式的이니 嚴格이 實行되어 그로 因하여 適當한 救濟가 없을 때에는 別途의 手段에 依하여 救濟한다는 衡平法

(equity)이 發達되어 있다. 이것이 英國法의 特色이다.

實體法과 手續法

이의 區別은 法律의 規定 內容의 相違를 標準으로 한 類別이다.

實體法이라 함은 權利義務의 發生, 變更, 消滅, 性質, 範圍等 即 法이 實現시키고자 하는 狀態 그 自體에 關한 法이고 手續法은 權利義務 實現의 手段 다시 말하면 그 行使 保全 履行 強制等의 手續을 規定한 法律을 말하는 것이다. 刑法 民法 商法等은 實體法이며 刑事訴訟法 民事訴訟法은 手續法(節次法)이다. 그러나 民法 中에도 手續法이 있고 民事訴訟法中에도 實體法이 混在한다. 다만一般的인 區別은 어느 內容이 그 法律令의 主要部分을 占이 하느냐에 따라 法令 그 自體를 實體法과 手續法의 二大別하는 것이다.

(1) 法律公示, 該訟手續, 裁判, 法廷法 및 民事訴訟手續法, 刑事訴訟手續法, 行政裁判所, 手續節次, 裁判等의 一般的 著述은 347.9에 分類하라.

(2) 特殊主題의 該訟節次 또는 裁判에 關한 圖書는 그 主題下에 分類한다.

例 行政裁判은 351.95.

刑事訴訟法은 343.1

(3) 憲法上 規定한 國民의 權利 및 自由一般에 對한 著述은 323.2 個個人의 權利下에 分類하라.

(4) 憲法 全文에 對한 解說은 320 憲法에 分類하고 行政, 司法, 國會 財政 地方自治等 憲法에서 規定한 個個의 事項을 個別으로 解說한 것은 각각 그것이 屬하는 主題下에 分類하라.

(5) 一國家의 政治的 制度를 他國家의 制度와 比較하여 그 由來를 討하고 있는

것은 影響을 받은 國家의 制度下에 分類한다.

國際法과 國內法

이의 區別은 國家社會의 規範인 國內法과 國際社會의 規範인 國際法의 類別인 것이다.

國內法은 國家 單獨 意思에 基因하여 國家와 個人 또는 個人相互의 權利義務를 規定하여 그 適用은 國內裁判所에서 行하여 지는데 反하여 國際法은 國家間의 合意에 依하여 國家相互間의 關係를 原則으로 規定하여 그 適用은 國際裁判所에 의하여 行해진다. 國際法은 違反者에 對한 刑裁가 國內法에 比하여 顯著하게 弱함으로 法律이 아니라고 主張하는 學說도 있으나 現在는一般的으로 支持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國際法이란 國際公法即 萬國法이라고 稱하는 것만이고 國際私法은 包含치 않는다는. 例 例如하면 國際私法은 國際法이 아니라 國內法이라는 點이다 國際私法은 國家相互間의 關係를 定하는 것이 아니라 一國內에서 있어서의 그 國民과 外國人과의 法律關係를 定하는데 있어서 自國法을 適用하느냐 그 外國人的本國法을 適用하느냐를 定하는 法이다.

이리하여 國際法에 國際公法과 國際私法이 있는것이 아니고 所謂 國際公法만이 國際法인 것이다.

(1) 國際私法의 一般的 著述은 341.59에 分類하고 一定 國家에 있어서 外來人에 對한 法的 地位 및 保障에 關한 圖書는 그 國家의 法律과 같이 分類하라.

(2) 特殊主題의 國際私法은 그 主題下에 分類하라.

例 破產法 332.75.

UN의 各機構는 341.13에 分類하고 特殊分野에 局限한 奉仕機構는 그 主題下에 分類하라.

例 國際民間航空機構는 387, 70611; UN ESCO는 060.

(3) 特殊主題에 對한 國際會議는 그 主題下에 分類한다.

(4) 一般的인 性質을 具有する 國際會議 및 國際關係의 調整에 依한 永續性 있는 團體는 國際機構과 같이 分類하라.

(5) 條約

特殊主題에 關한 條約은 그 主題下에 分類하라.

(6) 二個國 以上間에 締結된 條約集은 國家별로 細分하고 가장 主要한 國家 또는 標題紙에 나타난 順序에 따라 先位를 決定하라. 兩國의 地理區分 사이에 ○을 附하여 區別한다.

例 英國과 포튜갈의 條約은 341, 2420469

(6) 戰爭中, 또는 終戰後에 調印된 條約은 그 戰爭史와 같이 分類하라.

圖書마크圖案

圖協 마크圖案公募에 다음의 諸會員으로 부터 좋은 案을 보내 왔습니다. 7月 15日 까지 마감을 延長하오니 많이 應募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河氏 延世醫大圖書館 (13案)

李珪範氏 東亞高級圖書館 (2案)

洪明浩氏 忠州市立圖書館 (2案)